##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3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최종윤·송재호·조승래

최혜영 · 김진표 · 남인순

인재근 • 이용빈 • 임종성

허종식 · 정춘숙 · 양정숙

강선우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업무를 매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는 명시되지 않아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상기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전관리인증 사업에 건강기능

식품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자 함(안 제1조 및 제6조).

### 참고사항

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81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를 "식품·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로 한다.

제6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한다.

-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

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탁받은 사업

### 부 칙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     | 제1조(목적)                     |
| 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u>식품</u> | <u>식품·건</u>                 |
|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 <u>강기능식품・축산물의 안전관</u>       |
|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       | 리인증, 식품・축산물・수입식             |
| 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        | 품의 안전관리와                    |
| 하도록 함으로서 국민보건 증        |                             |
|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                             |
| 다.                     |                             |
|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    | 제6조(사업)                     |
| 의 사업을 한다.              |                             |
| <u>&lt;신 설&gt;</u>     |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
|                        |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              |
|                        | 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
|                        |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            |
|                        | <u>받은 사업</u>                |
| <u>1.·2.</u> (생 략)     | <u>2.·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
|                        | 같음)                         |
| <u>&lt;신 설&gt;</u>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
|                        |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
|                        |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
|                        |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            |
|                        | 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             |
|                        | 어<br><u>범</u>               |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 마. (생략)
- 4. 제1호부터 <u>제3호</u>까지의 사업 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u>5. · 6.</u> (생 략)
- 7. 그 밖에 <u>식품 및 축산물의</u>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
| 가. ~ 마. (현행과 같음)<br>6 <u>제5호</u> |
|                                  |
| 같음)<br>9 식품·건강기능식품·              |
| -<br>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
| 와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                    |
|                                  |